

의안번호	제558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5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10월 31일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8
----------	-----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발의자 : 박문희, 이광진, 김종필,
강현삼, 김영주, 김재중,
임헌경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안 제4조)

-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증가 및 입·출구 도로폭 신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입·출구 도로폭 규정 없음

⇒ 전시시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입·출구 도로폭 8미터 이상(단, 기존 도로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

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변경(안 제6조)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 완화
-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시설면적 50㎡ 이상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안 제7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세분화
- 사업장 대지 확보기준 3천㎡ 이상

⇒ 시설면적 4,500m² 이상(해체작업장 600m²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m² 이상, 사무실 등을 포함)

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협의
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13. 9. 26. ~ 10. 16.)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택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제6조제2항 중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라”로,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표 2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를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미터이상”을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성 능 점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시설이 도로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동차전문 정 비 업	원동기전문 정 비 업
가.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나. 전조등시험기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라. 속도계시험기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나. 압력측정기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라. 휠밸런스		○	○	○	
	마. 토인측정기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아. 노즐시험기					○
마.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나. 실린더호닝머신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라. 밸브시트카터					○
	마. 크랭크연마기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 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 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 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 시설 및 작업기준(제6조제3항, 제4항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업 종 별	업 종 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시 설 및 장 비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	
	잔가스연소장치	○	○	
	가스누출감지기	○	○	
	소화기	○	○	

주)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 업 기 준

-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7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m ² 이상
	해체작업장	600m ²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m ²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m ³ 이상)	압축기·과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과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	용기내부의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잔가스처리(이송) 설비, 잔가스 연 소장치 중 선택 하여 1식 이상
	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 감지기	1대 이상
	소화기	1대 이상

주)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 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p>
<p>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p> <p>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 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p>	<p>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p> <p>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추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

각 호-----.

1. 별표 2-----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

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2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③ ----- 따라 -----

----- 별표 3에 따른 -----

④ -----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

----- 따른 -----

----- 따른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 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
2. (생략)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제8조(폐차영업소의 설치) 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자동차폐차 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따른 -----

----- .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2. (현행과 같음)
3. -----
----- 2미터
이상-----

<삭 제>

<삭 제>

관 계 법 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2.5.23>

부칙 <법률 제11449호, 2012.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3. 9. 6.] [국토해양부령 제24호]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